

한국자선단체협의회

[붙임 1] 추진계획

수신자 :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및 모금단체/비영리단체 단체장
(경유) : 기획실장 또는 관련 담당자

제 목 : 『제3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』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 공모

- 귀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작년에 이어 2023년에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「제3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.
- 고물가·고금리 등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부를 통해 이웃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- 이에 본 상 취지에 맞는 개인, 기업 및 비영리단체를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어 2023년 6월 20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가. 행사명 : 제3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
나. 주 최 : 행정안전부
다. 주 관 : 한국자선단체협의회
라. 후 원 : 중앙일보
마. 접수마감: 2023년 6월 20일(화) 오후 6시까지
※ 우편인 경우 6월 20일자 우편소인 일 기준
바. 접수방법: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서류양식 다운로드, 공적조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우편으로 원본 제출
- 이메일 접수 : charitykorea@charitykorea.kr
- 우편 접수 : (03165) 서울 종로구 송월길 159 부귀빌딩 4층

[붙임 1] 추진계획. 끝

『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』 포상 추진계획

2023. 5.

사단법인 한국자선단체협의회



담당자 황수빈 대리 계지영 사무총장 김희정 이사장 황영기(의결)
시행 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23-27호(2023.05.18) 접수 ()
(우)03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159 부귀빌딩 4층 / 홈페이지 www.charitykorea.kr
전화 (02)735-0067-9 / 팩스 (02)735-0065 / 이메일 charitykorea@charitykorea.kr



행정안전부
민간협력과

I 추진 개요

- (추진배경) '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중 '착한기부자에 대한 정부포상 강화'에 따라 기부자 예우 등을 위한 '착한 기부자 시상식' 지속 개최 및 정부포상 확대
- (포상대상)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실천 및 나눔문화 조성·확산에 기여한 개인, 기업 및 비영리 모금단체 등
- (포상규모) 총 19점(대통령표창 2, 국무총리표창 4, 장관표창 13^{확정})
 ※ '22년 장관표창 13점, 대표·국표에 대한 최종규모는 9월 이후 확정 예정
- (심사) 공적심사실무위원회 사전심사,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적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
 -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공적심사실무위원회 구성, 사전심사 실시
 - 현장전문가, 기부단체 등 현지조사단 구성·운영
 - ※ 자원봉사대상 공적심사와 함께 추진
- (추진절차) 후보자 접수(5~6월) → 공적심사(~10월) → 포상(12.11.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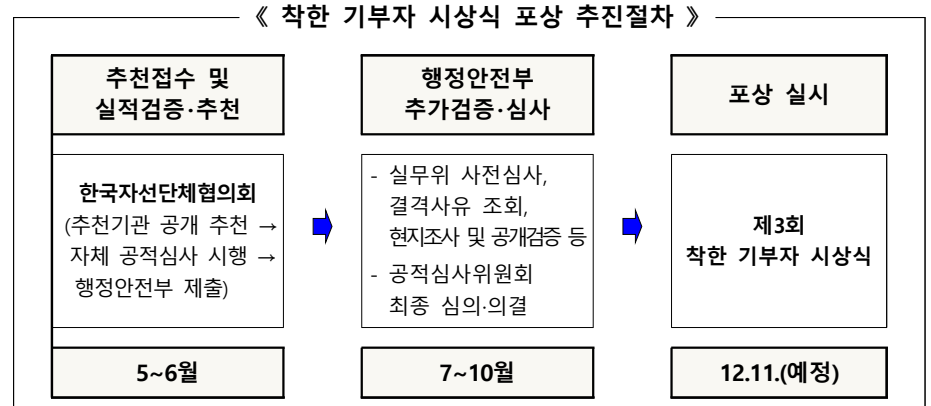
II 추천기준 및 절차

1 추천기준

- 나눔과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개인·기업
- 기부 문화 활성화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비영리 모금단체*
 - *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3년 이상 성과가 있는 단체
-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
 - ※ 추천기준일 : '23.10.1. / 개인, 기업, 모금단체로 구분하여 추천

2 추천절차

-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분야별(개인·기업·단체) 후보자를 추천기관* 을 통해 공개 추천받아 자체 공적심사(외부위원 참여) 결과에 따라 1.5배수, 훈격 구분없이 가나다순으로 제출
 - * (추천 자격) 후보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비영리자선단체, 비영리단체 장 및 기타 사회공헌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
- 수상여부와 훈격은 행정안전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하며, 추천기관 후보자가 모두 수상하는 것은 아님



III 공적확인 및 심사

1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-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심사위원의 60% 이상을 외부위원*으로 위촉
 - * 회원단체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 추천기관과 관련 없는 외부 전문가
- 자체 심사기준 : 정량지표 20점, 정성지표 80점
 - ※ 세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

< 심사지표(안) >

구분	지표명	지표의 정의	비고
정량지표 (20)	공적기간	- 기부·나눔을 수행한 공적기간(개인·기업)	
		- 프로그램·프로젝트 지속성(단체)	
정성지표 (80)	사회적 홍보효과 (확산성)	-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어 기부활동의 참여를 확산시킨 정도 (높은 수준, 중간수준, 낮은 수준)	
	파급효과	- 기부·나눔활동의 파급효과 및 현장변화의 정도 (국가적 수준, 분야별 수준, 지역적 수준)	
	주도적·협력적 참여노력	- 기부·나눔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도 - 활동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,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형성한 정도 (높은 수준, 중간수준, 낮은 수준)	
	지역사회 기여도	-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	
합 계			

※ 지표구분 : 정량·정성지표로 구분

▶ 정량지표 : 기부활동 공적기간을 계량적으로 심사하는 지표(20%)

- 10년 기준 만점, 1년 단위 2점

▶ 정성지표 : 기부·나눔분야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(80%)

※ 심사지표(안)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○ 기타 : '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행안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

2] 수공기간 ※ 기준일 : '23.10.1.

-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-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. 다만, 민간인의 경우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단축 가능
-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행정안전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

3] 재포상 금지기간 ※ 기준일 : '23.10.1.

《 정부포상 》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

-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《 행정안전부장관표창 》

- (개인) 제안제도,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 - * 정부포상 수여자(모범공무원 포함)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(단체)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

4] 추천 제한

《 정부포상 》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2) 형사처분
 - 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나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※ 「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-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- 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와 같은 법

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- 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- 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《 행정안전부장관표창 》

-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

※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(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, 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) :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, 정직 7년, 감봉 5년, 근신 3년(군인), 견책 3년, 직위해제 2년, 불문경고 1년 등

○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·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

※ 주요비위 :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써 금품·향응 수수 및 제공, 예산 및 기금 등 횡령·배임·절도·사기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,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·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

○ 기타 공·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단체 포함)

※ 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

5] 기타 :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

첨부 1

제3회 착한기부자 시상식 포상 추천 구비서류

◆ 상훈법 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한다.

한국자선단체협의회

제출서류	서식	제출형태	비고(작성요령 등)
【 공통서류 】			
①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- 대면회의 개최여부, 서면회의 시 사유 명시	서식1	스캔파일	-
①-1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	없음	-	▲ 자체보관, 요청 시 제출
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	없음	한글파일	-
③ 공적조서(한글파일, 스캔파일 모두 제출) *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 * 분량은 5장 내외(4~5장)	서식2	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	▲ 개인·단체·기업·지자체로 파일 구분 ▲ 한글·스캔파일 모두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(예시: 공적조서(홍길동)) ▲ 스캔파일에 작성자·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
④ 공적요약서 * 분량은 1~2장	서식3	"	"
⑤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	서식4	스캔파일	"
⑥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 포상에 대한 동의서	서식5	스캔파일	▲ 파일명에 후보자 성명 기재 (예시: 동의서(홍길동))
⑦ 후보자 추천 현황	서식6	스캔파일	-
⑧ 후보자 명단 - 개인·단체·기업으로 시트 구분 - 단체, 기업의 (법인)사업자 정보 등 필수기재	별도 첨부	엑셀파일	▲ 엑셀파일 내부 작성요령 참조
【 기타서류(해당자) 】			
⑨ 협회·단체 관련 체크리스트(자선단체협의회)	서식7	스캔파일	
⑩ 이력서,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	없음	-	▲ 자체보관, 요청 시 제출

서식 1

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

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

(한국자선단체협의회)

심의안건

-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후보자 공적심사 : 00명

의결사항

- 불임과 같이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.
- 불임 :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

2023년 월 일

구분	직위	성명	가부	서명
위원장				
위원				
간사				

□ **공적조서 작성요령**

- (1) **성명** : 한자를 병기
- (2) **생년월일** : 6자리로 작성
- (3) **군번** : 군인인 경우 작성
- (4) **성별** : 남/녀
- (5) **국적** : 외국인인 경우 작성
- (6) **주소** : 도로명주소로 작성
- (7~11) **직업, 소속, 직위, 직급·계급** : 표창장에 기재될 내용으로 작성
- (12) **공적기간** : 실제 자원봉사·기부를 한 기간을 00-00-00(년-월-일) 형태로 작성, 자원봉사단체 회원등록 일자, 활동시작 일자 등 객관적 근거가 (29)공적사항에 나타나야함
- (13) **공적분야** : [개인, 기업, 단체] 3가지 중 택일
- (14) **공적요지(70자 내외)** : (29)공적사항을 요약하여 작성
- (15) **추천훈격** : [장관표창]
- (16) **추천순위** : 개인, 단체, 기업로 상위 추천순위를 1부터 오름차순으로 작성
- (17~20) **조사자** :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이상의 실인을, 추천관란에는 단체대표 직인을 날인
 * 조사자는 공적, 경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엄정한 실사
- (21~24) **주요학력 및 경력** : (27)공적사항과 관련 있는 사항 기재
- (25~28) **과거 표창기록** : 유공명 기재, 없을 경우 “해당 없음”
- (29) **공적사항** : (12)공적기간 동안 나눔·기부활동 내용을 5장 내외로 작성(정보기입 2장 포함 최소 3장 ~ 최대10장)

서식 3

공적요약서

공 적 요 약 서

추천부문	성 명 (한자)	생년월일 (성별)	소속(주소) 및 직위	수공기간	추천기관
개인/기업/ 단체	()	. . . (남/여)	○○○단체 회원/회장	년 월	○○○
과거 표창기록					
공 적 사 항 (요약)					
※ 심사지표안과 공적사항을 연계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(공적조서의 주요 공적이 잘 드러나도록 제대로 작성 요망) <input type="radio"/>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radio"/>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radio"/>					

《작성예시》

공 적 요 약 서(예시)

추천부문	성 명 (한자)	생년월일 (성별)	소속(주소) 및 직위·직급·계급	수공기간	추천기관
개인	홍길동 (洪吉童)	45.08.15 (남)	○○○협회 자원봉사자	년 월	○○○
과거 표창기록		○○○부장관 표창('06), 국무총리표창('98)			
공 적 사 항 (요약)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○○○을 위한 나눔활동 전개 ○ 위 자원봉사자는 지난 20년간 ○○○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○○○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자로, 주요 활동실적은 다음과 같음 ○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○○○ 운영 : 100가구 3,000점 (개인 명/ 점, 시설단체 명/ 점) ○ 노숙인을 대상으로 ○○○○ 봉사활동 : 300명, 방한의류 450점 ○ 거동이 불편한 : 회, 명 ⇒ 이러한 봉사자의한 활동을 통해 ~ (※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심사지표의 달성 여부를 연계하여 서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○○활동 ○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: 25회 ○ 환경정화활동 전개 : 20회 ○ 자원재활용 캠페인 등 전개 : ○○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○○활동 ○ 조선족 동포 초청 공연 및 위문행사 실시 : 000명 동포 ○ 급식 나눔 : ○○회					

서식 4

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

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서

후 보 자	성 명	생년월일 (성별)	소속(주소) 및 직위·직급·계급	수공기간	추천기관
공 적 내 용	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				
확 인 결 과	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(현장실사, 증빙자료 제출·접수, 증언 청취 등) 및 확인결과 등 아래의 사항을 기재 - 공적내용(포상추천 사유와의 일치여부) - 공적의 파급효과(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정도) - 주위평판(직장동료와 지역주민의 여론) - 생활형편·직무수행 여건(어려움 및 위험성의 정도) - 과거 수상경력(장관표창 이하, 감사패 등) 및 기타 참고사항 - 종합의견				
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,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
2023 . . .					
작성자	○○○○과	(직급)	(성명)	(서명)	
확인자	○○○○과장	(직급)	(성명)	(서명)	

《 작성요령 》 ※ 공적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

- ① 구분 : 공적심사결과 우선순위를 기재
 - ② 소속 :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, 소속기관명, 단체명 또는 주민등록주소(읍·면·동 이상) 기재
* 기업은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, 주식회사·(주)의 표기를 명확히 함, 비영단체 지부는 소속단체명 및 지사·지부 등이 모두 나타나는 정확한 명칭을 기재
 - ③ 직위·직급·계급 : 표창장에 표기될 내용으로 기입
 - ④ 수공기간 : 추천 후보자의 수공기간
 - ⑤ 징계 : 징계처분·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·말소 여부를 표기
 - ⑥ 물의야기 : 감사원·검·경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또는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
 - ⑦ 수상경력 : 공적조서의 '과거 표창기록'에 기재되어 있는 수상 기록 중 가장 상위 훈격 포상 수상기록을 기재
* 표창훈격(연도, 포상명) 형식으로 기재하되(예 : 국무총리표창('05 재해 복구유공)), 없을 경우 “-”로 표기
- ※ 위 ⑤와 ⑥ 작성 시 조회·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“-”로 표기, 조회·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“무”로 표기

서식 7

협회·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

2023년 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
협회·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

포 상 명	기부문화 확산 유공		
주관부서	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지방행정정책관 민간협력과		
관련기관	○○협회(대표○○○, 회원 : ○○명, 예산 ○○억원)		
포상시기	12월 11일(제3회 착한 기부자 시상식)	포상주기	매년
	점검항목	점검결과 있음 없음	비고
	1. 포상계획의 적정성		
	- 추천기관의 위임전결 기준에 따른 결재 여부		
	-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		
	- 선발(추천)계획 공개 여부(부처 및 단체 홈페이지, 10일) · 선발(추천)기준 포함 여부		
	- 포상인원의 기관·지역별 배정 유무		불가피한 사유 유무
	2. 심사기준의 합리성		
	-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		회비, 기부금 등 조적기여도 등
	-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		
	- 특정실적(특정인)에 가점부여의 적절성		
	3. 선발과정의 공정성		
	- 공적심사위원 민간위원 3/5 이상 참여 여부		전체 위원 ○○명중 ○○명
	- 회의기록 작성 여부		수사, 언론보도, 소송, 자체징계 등 물의사실 공적심사위원 보고 등
	-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		
	-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		직위(급)별 현황
	- 추천제한자 추천여부		
	4.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		
	-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(20% 이상)		
	- 공개검증 실시 여부		(방법) (기간)
	-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		
	-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		
	-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		
	- 산업재해·공정거래·임금체불·세금체납 확인 여부		
	- 후보자에게 금품·부담 등 요구 여부		민간인 후보자 ○○명중 ○○명에 확인(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)
	- 관련 민원 발생 여부		